

1. 개정이유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국민의 투자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에 대한 일반의 청약의 정보공개 기간, 방법 등을 규정토록 하는 내용으로 「부동산투자회사법」이 개정(법률 제19681호, 2023. 08. 16. 공포, 2024. 02. 17. 시행)됨에 따라 청약에 대한 정보공개 기간 및 방법 등 주식의 일반 청약 제공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반 청약의 정보 공시 신설(안 제4조 신설)

- 1) 일반의 청약을 제공하는 부동산투자회사는 청약 시작일 기준 10일 전에 일반 청약에 대한 정보를 부동산투자회사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일반 청약 정보의 공시) ① 법 제14조의8제5항에 따라 주식을 일반 청약에 제공하는 부동산투자회사는 청약 시작일 기준 10일 전에 일반 청약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49조의6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1. 부동산투자회사의 회사명
2. 자산관리회사의 회사명(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는 제외한다)
3. 모집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
4. 모집 총액 및 주당 모집 가액
5. 청약기간 및 청약장소
6. 납입기일 및 납입장소
7.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8. 투자설명서 비치 및 공시장소
9. 판매회사의 회사명 및 담당자 연락처

② 부동산투자회사는 일반의 청약에 제공한 결과(「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8조에 따른 증권발행실적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를 납인 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법 제49조의6에 따른 부동산 투자회사 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9조제1항제3호”를 “영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4조(일반 청약 정보의 공시) ①</u> <u>법 제14조의8제5항에 따라 주식을 일반 청약에 제공하는 부동산투자회사는 청약 시작일 기준 10일 전에 일반 청약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49조의 6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정보 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u> <u>1. 부동산투자회사의 회사명</u> <u>2. 자산관리회사의 회사명(자기 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는 제외한다)</u> <u>3. 모집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u> <u>4. 모집 총액 및 주당 모집 가액</u> <u>5. 청약기간 및 청약장소</u> <u>6. 납입기일 및 납입장소</u> <u>7.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u> <u>8. 투자설명서 비치 및 공시장소</u> <u>9. 판매회사의 회사명 및 담당자 연락처</u> <u>② 부동산투자회사는 일반의 청약에 제공한 결과(「자본시장과</u>

제5조(신용평가 제외 대상 부동산 투자회사) <u>영 제29조제1항제3호</u>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3. (생략)	<u>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8조에 따른 증권발행실적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를 납인 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법 제49조의6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u> 제5조(신용평가 제외 대상 부동산 투자회사) <u>영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u>----- ----- ----- --. 1. ~ 3. (현행과 같음)
---	---